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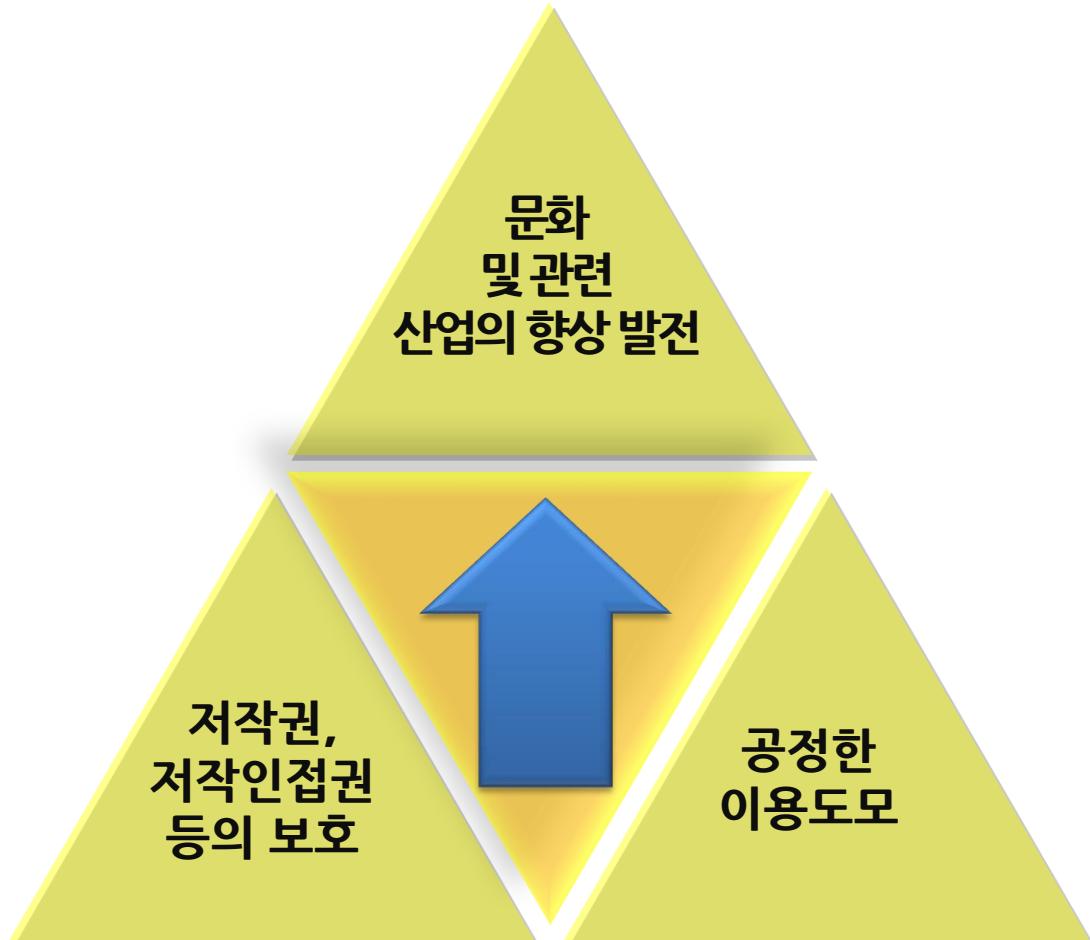
# 저작권 일반



저작권의 개념과 이용



# 저작권 보호의 개념



# 저작물

## ❖ 저작물의 성립요건

-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
- 아이디어 자체, 아이디어를 구현하는 방법이나 체계 등은 저작물에 해당하지 않음

Q. 동물이 그린 그림에는 저작권이 있을까?

## ❖ 저작물의 보호요건

- 창작성: 고도의 전문적 창작을 요구하는 것은 아니며, 남의 것을 모방하지 않은 정도면 충분
- 외부로 표현될 것: 사상이나 감정이 글, 소리, 그림, 영상등으로 외부에 표출되어야 함

원숭이 셀카엔 저작권이 없다!



## ❖ 저작물의 종류

- 소설·시·논문·강연·연설·각본 그 밖의 어문저작물
- 음악저작물
- 연극 및 무용·무언극 그 밖의 연극저작물
- 회화·서예·조각·판화·공예·응용미술저작물 그 밖의 미술저작물
- 건축물·건축을 위한 모형 및 설계도서 그 밖의 건축저작물
- 사진저작물(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제작된 것을 포함한다)
- 영상저작물
- 지도·도표·설계도·약도·모형 그 밖의 도형저작물
- 컴퓨터프로그램저작물

## ❖ 보호받지 못하는 저작물

### 아이디어

- 만인의 공유(Public Domain)로 남겨두어 누구나 이용할 수 있게 함으로써 다양한 창작활동을 가능하게 하고 있음

### 관공문서

- 헌법·법률·조약·명령·조례 및 규칙
-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고시·공고·훈령 그 밖의 이와 유사한 것
- 법원의 판결·결정·명령 및 심판이나 행정심판절차 그 밖의 이와 유사한 절차에 의한 의결·결정 등
-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작성한 것으로서 제1호 내지 제3호에 규정된 것의 편집물 또는 번역물
- 공개한 법정·국회 또는 지방의회에서의 연설

### 시사보도

- 단순한 사실의 전달에 불과한 시사보도는 개인의 사상이나 감정을 표현한 것이 아니므로 저작권법에 의해 보호받지 못함

# 저작권의 발생



저작물이 창작된 때부터 발생

어떠한 절차나 형식적 요건을 필요로 하지  
않음

## ‘저작물이 되기 위한 조건’

창작성(Originality)’이 있어야 함

→ 타인의 창작물을 베끼지 않고 독자적으로 창작한 것

자신의 감정이나 사상을 표현한 것

→ 단순한 사실의 나열은 저작물이 될 수 없음

머릿속에 있는 생각

→ 종이, 하드디스크 등과 같은 유형의 매체에  
‘고정(Fixation)’시켜 외부로 표현하여야 함

# 저작권의 등록

## ❖ 저작권의 등록

- 저작물에 관한 일정한 사항(저작자 성명, 창작연월일, 맨 처음 공표연월일 등)과 저작재산권의 양도, 처분제한, 질권설정 등 권리의 변동에 대한 사항을 저작권등록부라는 공적인 장부에 등재하는 것

## ❖ 저작권 등록의 효과



- ❖ 저작권 등록: 한국저작권 위원회(<https://www.cros.or.kr/>)

# 저작자

## ❖ 저작자

- 저작물을 창작한 자
- 창작적 표현에 기여하지 않은 조수, 의뢰자, 감수·교열자 등은 저작자가 아님

[2011가합103064 판결]



- 아이코닉스가 캐릭터 디자인에 대한 외형, 얼굴, 소품 등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거나, 오콘 측이 작성한 캐릭터에 대해 눈동자 위치, 발 모양 등 수정 의견을 제시
- 따라서, 뽀로로 저작물은 아이코닉스와 오콘의 공동저작물에 해당

# 저작자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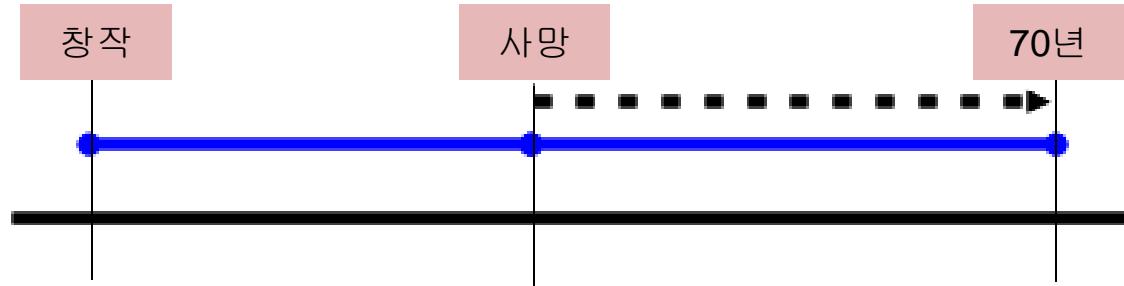
## ❖ 공동저작물과 결합저작물

구분	공동저작물	결합저작물
정의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<li>- 2인 이상이 공동으로 창작한 저작물로 각자의 기여분을 분리하여 이용할 수 없는 것</li></ul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<li>- 2인 이상이 참여하여 작성한 저작물로 각자의 기여분을 분리하여 이용할 수 있는 것</li></ul>
의의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<li>- 하나의 저작물에 2인 이상이 권리 공유</li></ul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<li>- 2이상 저작물의 결합, 별개의 권리 형성</li></ul>
취급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<li>- 저작권 행사는 공동저작자 전원의 합의에 의해서만 가능</li><li>- 저작재산권은 맨 마지막으로 사망한 저작자가 사망한 후 70년간 존속</li></ul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<li>- 저작권은 각자 행사 가능</li><li>- 저작재산권의 존속기간은 각자 기산</li></ul>

# 저작권의 보호기간

## ❖ 원칙

- 창작한 때부터 저작자 사망 후 70년까지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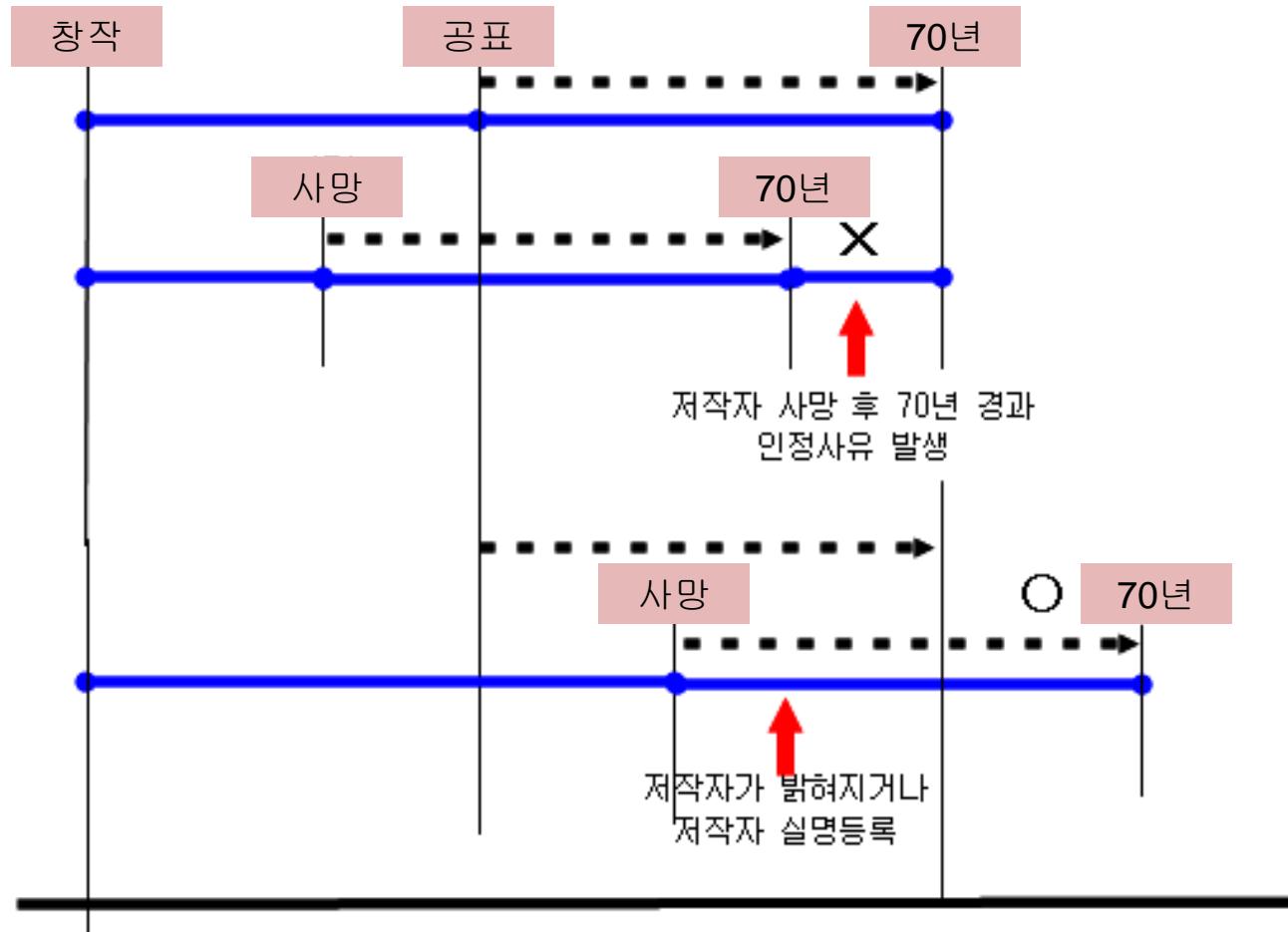
### 비틀즈와 저작권 보호

※ 비틀즈의 멤버였던 폴매카트니는 오노요코(존레논의 미망인)의 허락 없이는 비틀즈 당시 만들었던 노래를 부를 수 없다. 비틀즈의 노래는 대개 레논- 메카트니의 공동 작품이고, 존 레논이 죽은 이상 저작권의 반은 미망인인 오노요코에게 있기 때문이다. - 나무위키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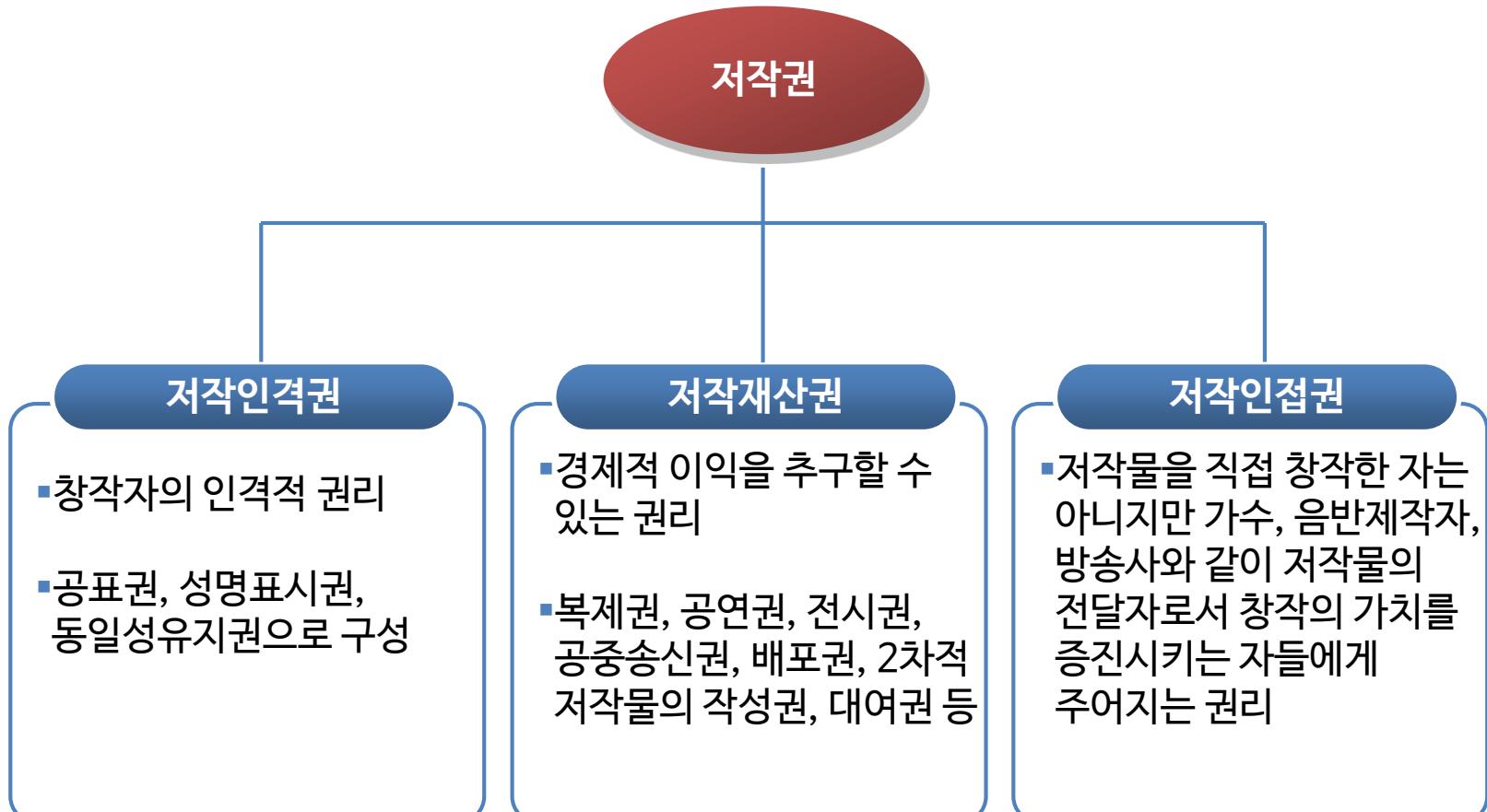
※ 존레논이 1980년 12월 8일 사망했으므로 저작권의 존속기간은 2050년까지다

# 저작권의 보호기간

## ❖ 저작자를 알 수 없을 때



# 저작권의 종류



저작권은 많은 권리로 구성되어 있다고 하여 ‘권리의 다발’이라고 불리기도 함

# 저작권의 종류



## ❖ 저작인격권

- 공표권
  - 저작자가 저작물을 공표할 것인지, 아니면 공표하지 아니할 것인지를 결정할 수 있는 권리

- 성명표시권
  - 저작물을 공표함에 있어서 저작자의 성명을 원작품이나 복제물에 표시할 권리

- 동일성 유지권
  - 저작물의 제호·내용·형식의 동일성을 원형 그대로 유지할 권리

## ❖ 저작인격권의 특성

- 저작재산권과는 달리 타인에게 양도할 수 없음

# 저작권의 종류



## ❖ 저작재산권

### 1. 복제권

- 저작자가 자신의 저작물을 복제할 수 있는 권리
- 타인이 허락 없이 복제하는 것을 금지할 수 있는 권리

예) P2P(Peer to Peer) 기술을 이용하여 무단 복제된 **소프트웨어나, 게임, MP3 파일을 내려 받아 PC에 저장**하거나 자신의 홈페이지를 꾸미기 위하여 타인의 웹사이트상의 사진을 무단 복제하는 것



# 저작권의 종류

## ❖ 저작재산권

### 2. 배포권

- 음악과 같은 저작물의 원본 또는 그 복제물을 공중에게 대가를 받거나 받지 아니하고 양도 또는 대여하는 것
- 저작자는 저작물을 스스로 배포하거나 타인에게 배포할 수 있도록 허락할 수 있으며 또한 이를 금지할 수 있음
- 배포는 복제물에 대한 점유의 이전을 수반한다는 점에서 인터넷상의 전송과 구별됨

**최초판매의 원칙  
(First Sale Doctrine)**

한번 판매되고 난 후에는 저작자는 그 구매된 저작물의 배포에 대하여 더 이상 권리를 행사할 수 없음

**권리소진의 원칙  
(Exhaustion Doctrine)**

1회 판매를 통하여 배포된 SW에 대하여 SW 저작권자의 권리가 미치지 아니하는 것

# 저작권의 종류



## ❖ 저작재산권

### 3. 2차적 저작물의 작성권

- 저작자는 자신의 저작물을 번역, 편곡, 변형, 각색, 영상제작 등의 방법으로 2차적 저작물을 작성할 권리를 가짐

예) 영국의 유명한 소설가 조앤롤링(J.K. Rowling)의  
해리포터를 영화로 또는 애니메이션으로  
제작하는 것



Chris Columbus 감독이 해리포터 영화를 만들고 싶다면 조앤롤링으로부터  
2차적 저작물을 만들 수 있는 권한을 얻어야 함

# 저작권의 종류

## ❖ 저작재산권

### 4. 공연권

- 저작물을 상연·연주·가창·연술·상영 등 일반공중에게 공개하거나 이의 복제물을 재생하여 공개하는 것
- 비록 돈을 주고 악보를 구입하였다고 하더라도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 그 악보를 가지고 **연주회를 열어 경제적 이득을 취하였다면** 공연권을 침해하는 것임
- 청중 또는 제3자로부터 어떤 명목으로든 공연·방송에 대한 **반대급부(관람료 등)**를 받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도 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음



# 저작권의 종류

## ❖ 저작재산권

### 5. 공중송신권

- 저작물을 공중이 수신하거나 접근하게 할 목적으로 무선 또는 유선통신의 방법에 의하여 송신하거나 이용에 제공하는 것
- 2006.12.1 저작권법을 개정하여 전송과 방송을 포괄하는 ‘공중송신’개념을 신설  
→ 저작권자는 존재하던 전송권과 방송권을 포섭하는 ‘공중송신권’을 갖게 됨



방송권과 전송권은 저작권자가 아닌 저작인접권자에게 보다 의미 있는 권리

#### 공중송신권

전송

일반공중이 개별적으로 선택한 시간과 장소에서 수신하거나 이용할 수 있도록 저작물을 유·무선 통신의 방법에 의하여 송신하거나 이용에 제공하는 것

방송

일반공중으로 하여금 동시에 수신하게 할 목적으로 유·무선 통신의 방법에 의하여 음향·영상 등을 송신하는 것

디지털음성송신

“공중송신 중 공중으로 하여금 동시에 수신하게 할 목적으로 공중의 구성원의 요청에 의해 개시되는 디지털 방식의 음의 송신을 말하며, 전송을 제외한 것”을 말함 (제2조 제11호)

# 저작권의 종류



## ❖ 저작재산권

### 6. 전시권

- 저작자는 미술저작물 등의 원작품이나 그 복제물을 전시할 권리를 가짐
- 전시권의 적용대상에는 미술저작물·사진저작물·건축저작물이 포함

# 저작권의 종류

## ❖ 저작인접권

저작인접권

실연자, 음반제작자 및 방송사업자에게 부여되는 저작권에 유사한 권리

배우, 가수, 연주자, 연출자 등  
실연자와 음반제작자 및 방송사업자

저작물의 직접적인 창작자는 아니지만, 저작물의 해석자 내지는 전달자로서 창작에 준하는 활동을 통해 저작물의 가치를 증진시킴

저작인접권의 보호기간



권리발생 시점으로부터 70년간만 보호  
(다만, 방송은 50년)

# 저작권의 제한

## ❖ 저작권의 자유 이용

### 교육을 위한 목적

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되었거나 초중등교육법 또는 고등교육법에 의한 교육기관 또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교육기관은 그 수업목적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공표된 저작물의 전부 또는 일부분을 복제·공연·방송 또는 전송할 수 있음  
(제25조 제2항)

### 2007년 6월에 시행된 개정 저작권법

학교 수업 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복제방지장치 등의 조치를 전제로 교사 및 학생들이 저작물의 일부분을 ‘전송’ 할 수 있도록 규정



원격교육이나 인터넷 등을 활용한 교육환경의 변화를 수용한 것

# 저작권의 제한

## ❖ 저작권의 자유 이용

### 개인적 목적으로 이용

비영리 목적으로 이미 공표된 저작물을 개인이나 가정과 같이 한정된 장소에서 이용하는 것을 '**사적 복제**'라고 하며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 복제할 수 있음

### 공표된 저작물의 인용

보도·비평·교육·연구 등을 위하여 정당한 범위 안에서 공정한 관행에 합치되게 이를 인용할 수 있다(제28조)

### 입학시험 기타 학식의 검정목적

학교의 입학시험 그 밖의 학식 및 기능에 관한 시험 또는 검정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저작물을 복제·배포할 수 있음

# 저작권의 제한



## ❖ 저작권의 자유 이용

### 프로그램 기능의 조사·연구·시험 목적의 복제

프로그램의 기초를 이루는 아이디어 및 원리를 분석하고 습득하기 위하여 프로그램의 기능을 조사·연구·시험목적으로 복제할 수 있음

### 백업목적

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은 프로그램의 멸실·훼손·변질 등에 대비하기 위하여 프로그램을 복제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

### 기타

재판 또는 수사 목적으로 복제할 수 있으며, 다른 프로그램과의 호환에 필요한 정보를 얻기 위해 프로그램을 역분석(Reverse engineering)하는 과정에서도 복제할 수 있음

# 저작권의 제한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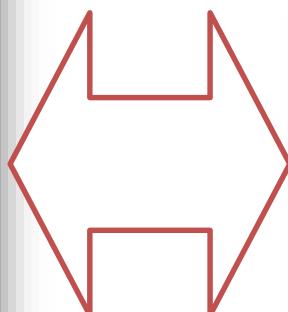
**카피레프트  
(copyleft)운동**

저작권에 의한 정보 독점에 대응하여 정보이용자의 권익을 옹호하는 움직임

## 카피레프트(copyleft)운동 의 예

**오픈소스SW운동**

- 카피레프트운동이 구체적으로 나타난 형태
- Free SW운동
- Unix가 상업화로 사용하지 못하게 되자 이에 반발, 공개 소프트웨어(Open Source SW)운동을 전개



# 저작권 적용 사례



## ❖ 돈을 주고 산 책에 있는 자료라면 마음대로 사용해도 되는지?

- 안된다. 돈을 주고 산 책이라고 하더라도 이를 이용할 때는 별도의 허락을 받아야 하는 것이 원칙이다. 돈을 주고 구입한 것은 책이라는 유형물이기 때문에 책에 대한 소유권과 저작물에 대한 저작권은 별개라고 할 수 있다.

## ❖ 레포트를 쓰면서, 신문기사 전체를 인용했어요. 인용은 가능하다고 들었는데, 문제없겠지요?

- 너무 많은 분량을 인용한 경우 위법할 수 있다. 저작권법 제28조에서 말하는 인용은 정당한 범위안에서 공정한 관행에 합치되게 인용한 경우에 한하여 저작권을 제한하고 있다.

# 저작권 적용 사례



- ❖ 1분정도 되는 동영상에서 어린 아이가 부정확한 발음으로 15초 정도 가요를 따라부르는 파일을 블로그에 올리면 저작권 침해인가요?
  - 음악저작물에 대한 공중송신권 침해 가능성이 있지만, 인용의 요건을 충족하거나 공정이용에 해당한다면 자유로운 이용이 가능하다.
- ❖ 김연아선수가 스케이팅의 배경음악을 사용할 때 저작권 이용허락을 받고 하는 걸까요?
  - 김연아 선수는 피겨스케이팅을 위해 음악에 대한 이용허락을 받는다.

# 저작권 적용 사례



- ❖ 학생회가 주관하여 한여름밤에 영화축제가 열렸습니다.  
학생회관 앞에서 프로젝터로 영화를 상영해주었는데요, 저작권 위반이겠지요?
  - 비영리공연의 요건을 충족한다면 문제가 없다.
- ❖ MP3를 복사해서, 노트북과 핸드폰, 태블릿에 모두 넣어두고 듣고 다닌다. 한번 구매해서 여러개 복사했으니 위법한 것인가?
  - 개인적인 이용을 위한 복제는 문제되지 않는다.
- ❖ 토익 공부를 하려고 CD를 리핑해서, 핸드폰에 복사해 넣고 들고 다니면서 공부합니다. 이건 문제가 없을까요?
  - 사적 복제(저작권법 제30조)에 해당하면, 허락을 받지 않고도 자유롭게 복제할 수 있기 때문에 문제없다.

# 저작권 적용 사례



- ❖ 기말고사 때 듣고 공부하려고, 교수님의 강의를 녹음했어요.  
저작권 침해인가요?
  - 사적 복제에 해당할 수 있다. 다만 사적 복제는 개인적인 이용을 위한 복제만을 허용하고 있기 때문에 녹음된 파일을 게시판에 올린다거나 다른 사람들과 공유하는 것은 위법한 행위가 될 수 있다.
- ❖ 웹하드에 영화를 올리면, 포인트를 준다고 해서 시간이 날때마다 열심히 올렸습니다. 늘어나는 포인트를 자랑했더니 친구가 그러다가 ‘감방’갈수도 있다고 하는데, 이런걸로 실형이 나오기도 하나요?
  - 웹하드 헤비업로더에게는 실형이 내려진 사례도 있다.

# 저작권 적용 사례



- ❖ 소수의 사람들만 초대를 받아서 가입할 수 있는 그룹 게시판을 통해 몇몇 사람만 영화를 공유하는 것도 저작권 침해인가요?
  - 저작권 침해에 해당한다.